

## 해양환경 모범선박 (Green Ship) 지정운영 제도

해양오염 방지에 모범적인 선박에 대하여 해양환경 모범선박 (Green Ship) 증서를 교부, 선박에 비치하여 해양종사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예방활동 강화

- 총톤수 400톤 이상, 선령 15년 미만 선박
- 3년간 해양오염 위반사실이 없는 선박
- 출입검사를 3년 이내 3회 이상 받고 모범적인 선박

## 해양환경 모범선박 (Green Ship) 지정 절차 및 방법

- 선주나 선장이 해양환경 모범선박 (Green Ship) 가

### 정책자료

# 모범선박 지정 운영제도

-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은 해양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해양 환경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양환경 모범선박 (Green Ship) 지정운영 제도를 1997년 7월부터 실시한다.

### 취지

- 선주·선원이 스스로 오염예방을 실천하는 역할과 책임동기 부여

### 해양환경 모범선박 (Green Ship) 지정요건

- 입신청서를 작성, 선적항 또는 주운항지 관할 해양경찰서에 제출
-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해양경찰서는 당해 선박에 대한 해양환경 모범선박 (Green Ship)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밀출입검사를 실시하여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실천능력을 평가
- 그 결과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이 해양경찰청에 지정

승인 요청을 하여 적합할 경우 해양환경 모범선박 (Green Ship) 증서를 교부

## 해양환경모범선박 (Green Ship) 지정에 따른 혜택

- 임의적 선박출입검사를 생략 (행위불명 오염사고 조사 등 특별한 경우 예외)
- 해양오염방지법에 정한 과태료 위반사항에 대하여 정상참작으로 경감
- 해양오염 관련 새 소식 및 홍보물을 제공받을 수 있음.
- 또한 출입검사를 원하는 예정일에 원하는 장소에서 받을 수 있으므로 계획적인 선박운항 및 선원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음.

## 해양환경 모범선박 (Green Ship) 지정제도 시행에 따른 예상효과

- 계획적인 선박운항 및 선원편익으로 경쟁력 제고
-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종사자의 역할분담으로 자긍심 제고
- 내실있는 출입검사로 해양오염사고 예방

## 해양환경모범선박 (Green Ship) 지정운영 제도 (해양경찰청 해양오염관리국)

### 취지

Q 해양환경 모범선박 (Green Ship) 지정운영 제도의 취지는 어떤 의미인가?

A 선주, 선원이 스스로 오염예방을 실천하는 역할과 책

임을 갖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해양오염방지법 위반이 없는 모범적인 선박 및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중·대형 선박에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Q 해양환경 모범선박 (Green Ship) 지정운영 제도는 언제부터 실시하나?

A 해양경찰청에서 1997년 7월 1일부터 실시된다.

### 주요내용

Q 해양환경 모범선박 (Green Ship)으로 지정되기 위한 기준은?

A 다음 모든 항목을 충족하는 선박으로 ①총톤수 400톤 이상, 선령 15년미만의 내국적 선박, ②해양환경 모범선박 (Green Ship)가입신청일전 6월 이상 3년 기간 내에 출입검사를 3회 이상 받고 모범적으로 의무를 준수한 선박, ③해양환경 모범선박 (Green Ship) 가입 신청일전 3년간 해양오염방지법에 정한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 (2회 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는 선박이어야 하며, ④외국적 선박 및 폐기물 운반선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Q 해양환경 모범선박 (Green Ship)으로 지정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은?

A ①선주나 선장이 해양환경 모범선박 (Green Ship) 가입신청서를 작성, 선적항 또는 주운항지 관할 해양경찰서의 해양오염관리과에 제출하면, ②가입신청서를 접수한 해양경찰서는 당해 선박에 대한 해양환경 모범선박 (Green Ship)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밀출입검사를 실시하여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실천능력을 평가하고, ③그 결과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이

해양경찰청에 지정승인 요청을 하여 적합할 경우 해양환경 모범선박 (Green Ship) 증서를 교부한다.

Q 해양환경 모범선박 (Green Ship)으로 지정된 후 해지되는 경우는?

A ①신청자의 해양환경 모범선박 (Green Ship) 지정 해지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②해양환경 모범선박 (Green Ship)요건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③해양환경 모범선박 (Green Ship)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양환경 모범선박 (Green Ship) 지정을 해지하도록 되어 있다.

Q 해양환경 모범선박 (Green Ship)으로 지정된 후 의무사항은?

A ①해양환경 모범선박 (Green Ship)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 출입검사를 원하는 날짜에 해양경찰서에 요청하여 검사를 받되 출입검사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출입검사일을 당겨 받을 수 있으며, ②선박에서 발생된 기름 등 폐기물을 적법처리하는 등 해양오염 관련 법규사항을 준수하여 해양환경보전에 모범적으로 실천하여야 한다.

Q 해양환경 모범선박 (Green Ship)으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

A ①임의적 선박출입검사를 생략 (행위불명 오염사고 조사 등 특별한 경우 예외)하고, ②해양오염방지법에 정한 과태료 위반사항에 대하여 정상참작으로 경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③해양오염관련 새 소식 및 홍보물을 제공받을 수 있다. ④또한 출입검사를 원하는 예정일에 원하는 장소에서 받을 수 있으므로 계획적인 선박운항 및 선원 편의제공을 얻을 수 있

으며, ⑤해양환경 모범선박 (Green Ship)의 선주 또는 선원중 특별히 해양오염방지에 공헌한 자는 해양환경상 (해양경찰청장)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다.

## 예상효과

Q 해양환경 모범선박 (Green Ship) 지정운영 제도 시행으로 인한 파급 효과는?

A ①해양오염관련 선박출입검사를 1년에 1회 받음으로 시간절약 및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②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해양종사자의 역할 분담으로 자긍심을 제공하며, ③내실있는 출입검사와 효과적인 사고예방으로 깨끗한 바다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 용어설명

### 부도유예협약

- 일시적 자금난파른 도산방지 목적 -

한보와 삼미그룹의 부도 이후 대기업의 연쇄 부도 사태를 막기 위해 지난 4월말 은행 주도로 도입된 협약.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기업이 금융기관들의 자금회수 공세로 도산하게 되는 사태를 막기위해 도입됐다. 원명은 '부실징후 기업의 정상화 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 협약'. 당초에는 '부도방지협약'으로 줄여 불렀으나 최근엔 취지와 기능을 감안, '부도유예협약'으로 바꿔 부른다. 협약 적용대상 기업은 은행 여신(대출금+지급보증)이 2천 5백억원 이상인 대기업으로, 주거래 은행이 협약 적용을 위해 채권단회의 소집을 통보한 날로부터 2개월(당초는 3개월)까지는 해당기업의 어음이나 수표를 돌려도 부도처리 되지 않는다.